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33
----------	---------

제안년월일 : 2020년 11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체 운영기관의 지정을 규정하며,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양성평등’ 을 ‘성평등’ 으로 함(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 ‘동등’ 을 ‘공평’ 등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함(안 제2조).
- 책무범위를 ‘양성평등정책 수립’ 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 으로 수정함(안 제3조).
- 컨설팅 사업과 필요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양성평등” 을 “성평등” 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동등” 을 “공평” 으로, 제2호 중 “예산이” 를 “예산서로서” 로, 제4호 중 “하는 데” 를 “하는데” 로 하며, 안 제2조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인지 결산서” 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양성평등” 을 “성평등” 으로, 제3항 중 “양성평등정책을 수립” 을 “성인지 예산을 편성” 으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양성등정책” 을 “성평등정책” 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① 시장은”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②정기” 를 “② 정기” 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기관 등) ①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침서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5조(지침서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10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 6. (제정안과 같음)</p>
<p>제12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6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협의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협의회 운영기관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실무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대상사업 선정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시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장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자문은 협의체의 자문으로 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민 참여) 서울특별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관리 체계 구축)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기관 등) ①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